

## 퍼블릭디자인혁신센터규정

### 제 1 장 총 칙

**제1조(목적)** 이 규정은 본 대학이 설치한 퍼블릭디자인혁신센터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2조(명칭)** 본 센터는 퍼블릭디자인혁신센터 <Public Design Innovation Center>(이하 '본 센터'라고 한다)라 부른다.

**제3조(소재)** 본 센터는 가천대학교 글로벌캠퍼스 내에 두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, 필요사업에 따라 교외에 둘 수 있다.

### 제 2 장 사 업

**제4조(센터의 목적)** 본 센터는 퍼블릭디자인 및 관련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와 기술 기반의 지원을 목적으로 한다.

**제5조(사업)** 본 센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아래와 같은 사업을 한다.

1. 산업자원부 디자인혁신센터(DIC) 사업
2. 퍼블릭디자인 분야 연구 및 전문가 교육지원 사업
3. 지자체 및 산업체와의 퍼블릭디자인 교류 협력사업
4. 기타 센터의 목적 및 발전에 관련된 국내외 사업

### 제 3 장 조 직

**제6조(조직)** 본 센터에 각각의 사업부 및 협력부를 둔다.

**제7조(센터장)** 본 센터에 센터장을 두며, 센터장은 설립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사업과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는 자로 한다.

1. 센터장은 조교수 이상의 교원 중에서 산학협력단장의 제청에 의해 총장이 임명한다.
2. 센터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.

**제8조(각 부장 등)** ①각 부의 부장(이하 '부장'이라 한다)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5-1-11~2 제5편 부설연구기관

②사무직원은 센터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1년으로 한다.

③감사는 센터장의 추천에 의해 총장이 임명하고 임기는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.

**제9조(직무)** ①센터장은 본 센터를 대표하고 운영을 총괄한다.

②부장은 각 부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직무를 수행한다.

③사무직원은 센터장의 지시를 받아 사업수행의 업무를 보조한다.

④감사는 본 센터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고 그 결과를 운영위원회에 보고한다.

## 제 4 장 운영위원회

**제10조(설치)** 본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심의·의결하기 위하여 운영위원회를 둔다.

**제11조(조직)** 운영위원회의 조직,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1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
2. 운영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
3. 위원장은 센터장이 겸임하고 운영위원회를 대표한다.

4. 위원은 각 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부장의 추천에 의해 센터장이 임명한다.

5.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.

6. 간사는 사무직원이 겸임한다.

**제12조(직무)** 운영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·의결한다.

1. 센터의 사업계획 및 추진에 관한 사항

2. 센터의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

3. 센터 규정의 개정에 관한 사항

4. 기타 센터의 운영에 관한 사항

**제13조(소집과 회의)** ①본 센터 운영위원회의 소집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 분기초에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14조(의결)** 본 센터 운영위원회의 의결은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한다. 단, 가부동수일 때에는 위원장이 결정한다.

**제15조(회의록)** ①운영위원회는 회의가 소집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해

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의안에 참여한 위원들이 서명·날인해야 한다.

## 제 5 장 평가위원회

**제16조(목적)** 본 센터의 사업 및 운영에 관한 성과를 평가하고 그 결과에 따라 운영방향을 개선하기 위하여 평가위원회를 둔다.

**제17조(조직)** 평가위원회의 조직, 위원의 자격 및 임기는 다음과 같다.

1. 평가위원회는 위원장, 위원 및 간사로 구성한다.
2. 위원장은 위원들의 호선으로 선출하며 임기는 1년 단임으로 하고, 평가위원회를 대표한다.
3.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5인 이상 10인 이내로 구성한다.
4. 위원은 각 부장을 당연직으로 하고, 당연직과 동수의 외부위원들을 센터장이 위촉하여 구성한다.
5. 위원의 임기는 1년으로 하고 1회 중임할 수 있다.
6. 간사는 사무직원이 겸임한다.

**제18조(직무)** 평가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평가한다.

1. 자체 평가의 실행에 관한 사항
2. 기타 센터의 평가 및 개선에 관한 사항

**제19조(소집과 회의)** ①평가위원회의 소집은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.

②정기회의는 매년 말에 년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또는 위원 3분의 1이상의 발의가 있을 때 위원장이 소집한다.

**제20조(회의록)** ①평가위원회는 회의가 소집될 때마다 회의록을 작성, 보관해야 한다.

②회의록에는 위원장과 의안에 참여한 위원들이 서명·날인해야 한다.

## 제 6 장 재 정

**제21조(세입과 세출)** ①본 센터의 세입은 교비, 국고지원금, 연구활동 기부금, 산업체 출연금 및 기타 수익금으로 충당한다.

②본 센터의 세출은 센터 운영 경상비, 연구개발용 기기 구입비 및 기획연구수행비 등 설립목적에 맞도록 사용되어야 한다.

③본 센터를 통하여 이루어지는 연구 용역비의 일정액을 운영비로 사용할 수 있다.

5-1-11~4 제5편 부설연구기관

제22조(회계연도) 본 센터의 회계연도는 본 대학 회계연도와 같다.

부 칙

이 규정은 2012년 03월 01일부터 시행한다.